

대구예술대학교 전공변경에 관한 규정

(개정 2006.03.08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08.03.13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2.04.18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5.01.26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3.01.25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4.08.19. 교무위원회)

제1조 (전공변경시기 및 허가) ① 전공변경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때 허가할 수 있으며 매학기 초 30일전 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 (개정 2008.3.13.) (개정 2012.4.18.) (개정 2015.3.1.) (개정 2024.08.19.)

② 삭제 (2015.3.1.)

③ 전공변경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사를 행 할 수 있다.

④ 삭제 (2024.08.19.)

⑤ 모집중지전공으로의 전공변경은 불허한다.(개정 2015.3.1.)

⑥ 삭제 (2024.08.19.)

제2조 (절차) 전공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제출.입하고자하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, 기이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전공교수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규정 내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전공배정 전에는 학부장의 승인과 전공배정 후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신설 2022.08.01.)

제3조 삭제 (개정 2008. 3. 13)

제4조 (이수과목 및 학점) ① 전공변경 전 취득한 교양,교직과목은 모두 인정하며 전공과목(공통과목)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공변경 전 취득한 학점 중 전공변경 후의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졸업심사 전까지 전공변경한 전공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3.01.25.)

② 전공변경한 학년 학기 부터 전공변경 후의 필수과목 모두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전공변경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변경 후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08.19.)

1. 제1,2학년 전공변경 시, 전공 75학점 이상 이수

2. 제3,4학년 전공변경 시, 전공 40학점 이상 이수 (전문개정 2015.3.1.)

단,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및 동일학년 학생의 전공변경후의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.

1.제1,2학년 전공변경시, 전공 60학점이상 이수

2.제3,4학년 전공변경시, 전공 30학점이상 이수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08.1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